

의안번호	2112145
의 퇴 인	박광온 의원
회 답 일	2021. 7. 2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확대

【비용추계서】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비용추계서 요약

I. 재정수반요인

재정수반요인	추계여부	비고
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조기환급 확대 (안 8조의4)		
- 2021년 과세연도에 대한 조기 소급공제 허용	○	
- 조기환급가능액 범위를 직전 3년간 납부한 법인세로 확대	×	소급공제 신청 법인들의 연도별 총부담세액·소급공제 신청금액 등에 대한 자료 부재

II. 비용추계 결과

□ 재정수입 변화 : 향후 2년간 총 재정수입에 변화 없음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: 2021~2022년
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누적	연평균
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조기환급 확대 (안 8조의4)	-258	+258	0	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차 례

I. 비용추계 결과	1
II. 재정수반요인	1
III. 비용추계의 전제	2
IV. 비용추계 상세 내역	2

일러두기

-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 -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-

I. 비용추계 결과

- 2021년 과세연도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 결손금 소급공제를 2021년에 조기 허용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은 2021년 258억원 감소, 2022년은 258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어 2년간 총 재정수입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추계
 - 개정안은 2022년에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할 금액을 2021년 상반기 결손금을 기준으로 2021년에 미리 환급금을 지급 하는 것이므로 전체 기간의 세수변화는 없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: 2021~2022년

(단위: 억원)

	2021	2022	누적	연평균
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조기환급 확대 (안 8조의4)	-258	+258	0	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-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 확대(안 제8조의4)
 - 2021년 과세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 조기에 소급공제를 허용하여 2021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
 - 단, 2021년에 받을 결손금 소급공제를 2020년에 받는 것이므로 전체 기간의 세수변화는 발생하지 않음
 - 현행에 따라 2020년 과세연도 전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해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한 바 있음
 - 2020년 12월 31일 또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직전 1년으로 규정된 환급범위를 직전 3년으로 확대

Ⅲ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2021년 과세연도에 대한 조기 소급공제 허용

- 2020년 조기환급 시행 실적 258억원이 2021년도에도 동일하게 유지됨을 가정

나. 조기환급가능액 범위를 직전 3년간 납부한 법인세로 확대

- 현행은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직전연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한도로 환급이 가능하나, 개정안은 환급가능액의 범위를 직전 3년간 납부한 소득세·법인세액으로 확대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소가 예상됨
 - 환급범위를 초과한 결손금은 다음연도($t+1$)에 발생한 이익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후 법인세가 계산됨
- 동 개정안에 따라 결손금 조기환급액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2021년 법인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, 다음연도($t+1$)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 결손금 차감액이 조기환급대상 결손금만큼 감소하여 법인세수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세수변화는 없음
 - 해당 중소기업이 폐업 등을 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계속기업이며, 동일한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가정
- 연도별 세수변화 규모 추정을 위해서는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는 법인들의 연도별 총부담세액·소급공제 신청금액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추계대상에 제외

Ⅳ. 비용추계 상세 내역

- 개정안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반기가 지난 후에 결손금에 대해

조기환급을 허용

- 2020년 조기환급 시행에 따라 558개 법인이 총 258억원의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하였으며, 2021년 소급공제 신청액은 2020년과 동일한 규모일 것으로 가정

[표 2] 2020년도 중소기업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 신고 규모

법인수(개)	환급신청액(억원)
558	258

자료: 국세청

- 중소기업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 특례 2021년 확대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1년 25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며, 2022년은 258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어 2년간 총 재정수입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추계
 - 개정안은 2022년에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할 금액을 2021년 상반기 결손금을 기준으로 2021년에 미리 환급금을 지급 하는 것이므로 전체 기간의 세수변화는 없음

[표 3]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 2021년 확대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

(단위: 억원)

	2021	2022
법인세 및 소득세	-258	+258

국회예산정책처	세제분석2과
과장	백경엽
추계세제분석관	김태민
연락처	02-788-4836
	taemin@nabo.go.kr
